



# 공단 소송의 유형과 직무상 주의의무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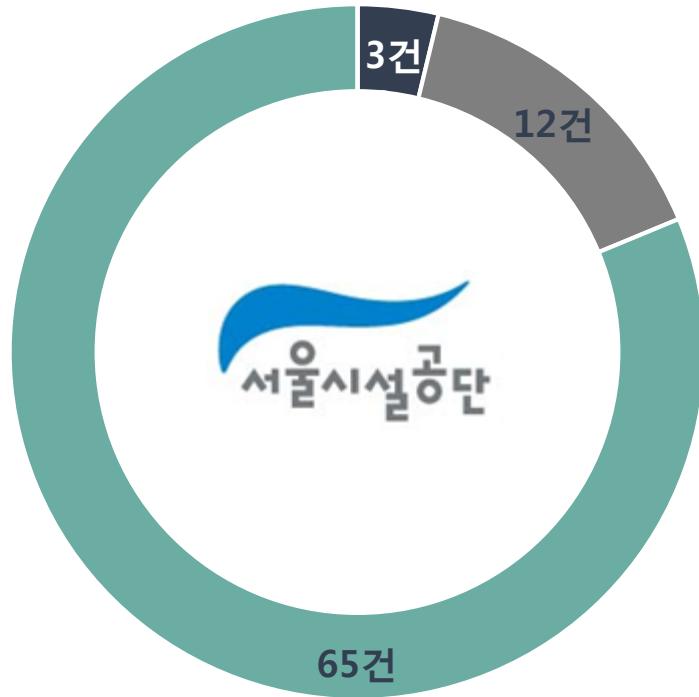
# 1. 공단소송유형 1) 최근 6년간 분쟁현황(2013~2018.9)



구 분	계	민 사 소 송					행 정 소 송					형 사 사 건			
		소 계	승 소	패 소	기 타	진 행	소 계	승 소	패 소	기 타	진 행	소 계	기소	불기소	진 행
총계	198	153	38	4	67	44	13	5	0	5	3	32	10	20	2
2013	12	11	2	0	0	0	1	0	0	0	1	0	0	0	0
2014	18	17	7	0	0	0	0	0	0	0	0	0	0	0	0
2015	21	15	5	1	6	2	4	4	0	0	0	2	0	2	0
2016	57	44	4	0	0	0	0	0	0	0	0	11	4	7	0
2017	54	36	18	1	11	6	3	0	0	3	0	15	3	11	1
2018	36	30	2	0	6	22	2	0	0	0	2	4	3	0	1

cf) 연도 : 1심 소 제기일 기준 / 진행사항 : 최종심 결과 반영/ 기타 : 소취하, 조정 등

# 1. 공단소송유형 2) 분류 : 민사 및 행정 소송 (2016~2018.9)



공단 원고 사건(80건)

공단 사업 성격 상 필요한 소송



# 1. 공단소송유형 2) 분류 : 민사 및 행정 소송 (2016~2018.9)



공단 **피고** 사건(37건)

주로 수익시설 관련 발생

## 수익시설 (14건)

- 임대사업 관련(11건) : 수탁법인과의 협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 등
- 손해배상청구(3건) : 점포들의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액 청구

## 도로 (9건)

- 구상금 청구(7건) : 도로 상 사고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 손해배상청구(2건) : 도로 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노동 (4건)

- 통상임금 등

## 기타 (10건)

- 주차장 위탁관리료 관련(2건)
- 입찰(1건 - 낙찰자지위확인 소송)
- 기타(7건)

# 1. 공단소송유형 3) 분류 : 형사사건 (2016~2018.9)

당사자 구분	결과	건수
공단 고소인 (총 26건)	기소	9
	불기소	16
	진행 중	1
공단 직원 피고소인 (총 4건)	기소	1
	불기소	2
	진행 중	1

1 형사 사건은 법인 책임이 아니라, **개인 책임**이 원칙. 공단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조직충성도 및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의 필요

☞ 범죄가 개인 비리가 아니라  
업무시스템의 문제일 경우 개선 필요

2 벌칙 중에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 대표자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 2. [민사 행정 분야] 직무상 주의의무 1) 계약서

### 계약서 해석에 관한 판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등).

## 2. [민사 행정 분야] 직무상 주의의무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근거법령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이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략)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공유재산법 ↪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만을 규정

판례> 변상금 부과의 한계<sup>2010. 10. 19. 대법원 선고 2009다1555 판결, 2010. 10. 19. 대법원 선고 2009다1555 판결,</sup>

지방계약법 ↪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추가

변상금 부과

입찰시 유의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 2. [민사 행정 분야] 직무상 주의의무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인사노무 업무시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청구 가부

징계시 주의의무

징계처분이 무효일 경우  
징계위원들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 여부

직장내 성추행과 사업주  
(회사) 책임

#### ① 마사회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약정”  
이라고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남용 등으로 무효라고 판결되었지만,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이라고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남용 등으로 무효라고 판결되었지만, 그것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  
원들이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징계위원들에  
게 불법적이다. 그 이유는 징계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①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동료근로자를 징계한 사업주에 대한 불법  
행위책임 인정(서울고법 2018.4.20. 선고 2017나2076631 판결)  
비추어 징계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당해 불법적처분을  
한 것이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법적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당해 해고 등의 불법적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거  
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3. 형사상 각종 벌칙규정

####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각 부서의 업무상 적용되는 각종 법률의 벌칙 규정

#### 조사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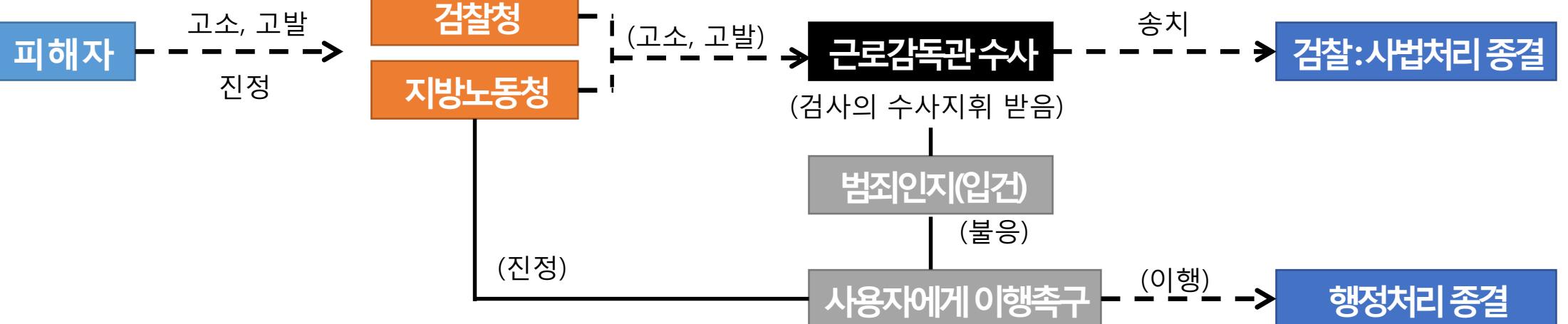
### 3. 형사상 각종 벌칙규정

노동진정사건

형사 사건 관리 필요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

근로감독관 =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죄에 한해서 사법경찰관리



# 참고) 불기소이유통지문

제출자:법무법인

제출일시:2018.04.17 17:07, 출력자:법무법인

다운로드일시:2018.05.23 16:57

제출자:법무법인

제출일시:2018.04.17 17:07, 출력자:법무법인

다운로드일시:2018.05.23 16:57

제출자:법무법인

제출일시:2018.04.17 17:07, 출력자:법무법인

다운로드일시:2018.05.23 16:57

문서확인번호 2152-3511-5946-8200

발행번호 2-210-2018-73197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

문서번호 및

2018. 4. 12.

수 신

발 신 서울 중 앙 지 방 검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형재

② 고 소 인 성 명

피의자  
(파고소인)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죄 평 가.사기

⑥ 처 분 검 사

⑦ 처 분 년 월 일 2018. 3. 16.

⑧ 처 分 요 지 가-혐의없음(증거불충분)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⑩ 비 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3. 16.

사건번호 2018년 형재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 I. 피의자

II. 죄 명 사기

### III. 주 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2008. 4. 10.경 서울 동작구 상도1동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일수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4개월 뒤에 원금을 바로 변제하고 매월 이자는 원금의 3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사기
2008. 10. 23.경 위 세탁소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빨리 변제해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갚돈을 타서 1년 뒤에 변제하겠다. 이자는 매월 원금의 3부를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사기
2009. 2. 17.경 위 세탁소에서 고소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수령할 계금이 있으니까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피의자의 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사기

4. 2009. 6. 1.경 위 세탁소에서 고소인에게 '세탁소 근처에 있는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2009. 12. 1. 까지 그동안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표 3매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사기

- 고소인은 피의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꼭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아직 대여금을 갚지 않고 있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갚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사기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일부 액수에 다툼이 있음),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2010.부터 세탁소의 운영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의자의 사문서위조는 본건 범행 이후에 이루어져 본건 처분행위와 무관한 점,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금전거래가 2006.부터 계속 있었던 점, 피의자가 2008. 4.부터 2009. 6. 1.까지 돈을 빌리고 그 이자를 2010. 2. 12.까지 계속 지급했던 점,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적이 없으며 현재까지 같은 지역에서 계속 주거하고 있는 점 등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얼마를 변제하여야 하는지 등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및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감사합니다